

가금류도축장 검사업무 공영화에 따른 가금 축산물 위생 안전성 강화



글 : 김승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주무관
(발행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위생25시 2015 여름호)

머리말

도축장은 비식용인 가축이 식용인 축산물로 전환되는 장소로 인수공통질병의 예방과 축산물을 소비하는 국민의 공중 보건 측면에서 국가에 의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및 선진 외국에서는 영업자의 상업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부 소속 수의검사관이 도축검사를 실시하여 도축검사에 합격한 축산물만 식용으로 유통하도록 관리하여 축산물을 소비하는 국민의 공중위생 향상에 매우 중요한 장소로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정부에서는 포유류 도축장에 대하여는 정부 검사관(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도축장에 상주하여 도축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04년 농림부 업무보고(BSE 대책) 및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

대책을 수립('04. 7. 29)하여 그간 도축장 영업자가 지정하였던 검사원을 공공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의 검사원으로 채용·배치토록 추진하여 '05년 검사원 100명을 시작으로, '06년 30명 증원, '08년 20명 증원하여 총 150명의 검사원을 포유류 도축장(소·돼지)에 배치하여 생체검사·해체검사 및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등 정부주도의 도축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체계를 구축하였다.

한편, 정부주도의 도축검사를 실시하는 포유류(소·돼지)에 반하여, 가금 도축검사는 민간 검사체제로 이원화되어 공영 검사로의 전환은 '04년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에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였으며, '11년 선진국 안전·위생 수준을 지향하는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대책('11. 12)”에 닭오리 정부검사관제 도입을 추진하였으

며 이후 입법 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가금류 도축장 도축검사를 기존 영업자가 고용한 책임수의사에서 정부검사관이 실시토록 개정(13. 7. 30)하였으며 도축장 규모에 따라 '14. 7. 1일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하였다.

- ('14. 7. 1일 시행) : 일일 도축 8만수 이상 도축장
- ('15. 1. 1일 시행) : 일일 도축 5만수 이상 8만수 미만 도축장
- ('16. 1. 1일 시행) : 일일 도축 5만수 미만 도축장

가금류 도축장 도축검사 공영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14년 7월 1일부터 도축장 8개소에 대하여 정부 검사관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축검사 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을 42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으로 신규

채용·배치하여 '05년부터 중장기적으로 검토 하였던 가금류 도축장의 도축검사 공영화제도가 10여 년 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으며, 기존 도축장에서 도축검사를 담당하였던 책임수의사 중 검사원 전화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환 배치하여 가금 도축검사 공영화 제도 시행 초기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였다.

가금 도축검사 공영화 제도에 따른 검사원 배치 인원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과 검사원의 수”에 근거하여 일일 평균 도축두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검사원 인력을 배치('14년 42명, '15년 39명)하였으며 제도 시행 마지막 최종 단계인 '16. 1. 1일에는 55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으로 전국 가금류 도축장 56개소 총 136명의 검사원을 배치하여 도축검사 업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 요약

구분	기존		변경	
	도축검사	소속	도축검사	소속
포유류 도축장 (소·돼지 등)	도축검사관	시·도 (지방수의공무원)	도축검사관	시·도 (지방수의공무원)
	도축검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도축검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금류 도축장 (닭·오리 등)	책임수의사	영업자 고용	도축검사관	시·도 (지방수의공무원)
	도축검사원	영업자 고용	도축검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연도별 가금 도축장 검사원 배치 현황

'14년 7월 1일			'15년 1월 1일			'16년 1월 1일(계획)		
대상	개소	배치인원	대상	개소	배치인원	대상	개소	요구인원
일일 도축 8만수 이상 도축장	8개	42명	일일 도축 5만수 이상 8만수 미만 도축장	11개	39명	일일 도축 5만수 미만 도축장	38개	55명

가금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지난 18대 국회에서 도계검사 공영화 제도 시행에 따른 공무원 수의 증가와 이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 가중에 따른 정부부처의 반대로 도축검사 공영화 제도는 입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2013년 6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도축검사원 채용에 대한 비용을 현행(포유류 도축검사원)과 같이 축발기금으로 총당(총 비용의 60%)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축검사관 채용에 대한 비용 및 도축검사원 채용에 따른 비용(총비용의 40%)은 도축검사 수수료로 총당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다음의 사유로 타당한 것으로 심의한 바 있다.

- 축산물의 경우 유해 미생물이나, 인수공통전염병 초기, 도축장에서 발견이 중요하므로 공무원 신분인 검사관이 도축검사업무 실시 타당
- 도축검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자 영업자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영업자가 고용하는 자가 담당할 경우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 문제 발생

- 포유류(소·돼지)는 지방정부 검사관이 도축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가금류는 영업자가 고용한 책임수의사가 실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
- 영업자도 책임수의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한국을 제외한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도 업체가 고용한 책임수의사의 검사로 검사관의 검사를 갈음하는 제도는 찾아볼 수 없음

제도 시행 초기 지자체의 도축검사관 인력이 부족한 현실과 가금 도축 특성상 주말, 야간 도축잡업으로 인한 도축검사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현실적인 상황 등 어려움이 있으나, 이제 막 첫발을 내딛은 가금 도축검사 공영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정부, 업계, 지자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도축검사 공영화 제도의 정책 목표인 닭·오리 도축검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증진시키고, 실질적인 도축장 위생관리를 통해 식육 위생수준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한다.

참고 1¹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13.7.30) 신규조문 대비표

<p>제11조(가축의 검사)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의사(이하 "책임수의사"라 한다)의 검사로써 검사관의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p> <p>②·③·④ (생략)</p>	<p>제11조(가축의 검사) ①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p> <p>-. <단서 삭제> ②·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식육의 경우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로써 검사관의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p>	<p>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 _____ _____ _____ _____</p> <p>_____ . <단서 삭제></p>

부칙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마리 초과인 도축장 : 2014년 7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 2015년 1월 1일 3.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 2016년 1월 1일
----	--

참고 2. 외국 닭·오리 도축검사제도

국명	관계법령	규제대상		검사원 교육훈련 등	비고
		업태	가금종류		
미국	가금생산물 검사법(1957)	제품이 지역주간 유통되거나 외국에 수출되고 있는 업체 등	닭, 칠면조	- 수의검사관 - 검사관(Inspector)	- 농고 졸업후 농림성 훈련센터에서 2주간 훈련받고 인정된 자
캐나다	식육검사법(가금의 검사)(1955)	제품이 지역주간 유통되거나 외국에 수출되고 있는 업체 등	닭, 칠면조, 오리, 꿩, 거위, 호로새	- 수의검사관 - 검사관(Inspector)	- 농고 졸업후 2년간 현장에서 교육훈련 받은 후 일정 시험 합격한 자
EU	가금육위생검사 규정(1971)	EU 국가간 유통 및 EU 가맹국 내	닭, 칠면조, 거위, 오리, 호로새	- 수의검사관 - 검사관(Assistant) - 검사보조원	- 정부 또는 정부지정 기관 훈련에서 수의검사관과 같이 3개월
영국	가금육 위생규정(1976)	모든 가금처리장	닭, 칠면조, 거위, 오리, 호로새	- 수의검사관 - 검사관(Inspector)	- 대학학과의 지정 또는 농무성의 인정시험과 훈련
태국	가금 및 가금육 검사규칙(1981)	등록가금처리장	닭, 오리	- 수의검사관	
대만	중국국가표준(CNS) 1)냉동가금육법 2)냉동가금육검사법	수출시설	닭, 칠면조, 거위, 오리 등 가금류	- 수의검사관	
일본	식조처리사업의 규제 및 식조 검사에 관한 법률(1989)	식조처리장(연 30만 수 이상) : 195개소 인정소규모 : 2,984개소	닭, 오리, 칠면조, 기타 가금류	- 수의검사관(지자체) - 지정검사관 검사원 : 수의사회 등 16기관, 191명 - 위생관리자(보조원)	- 검사수수료 : 3~5엔/수당 • 도부현 : 수입증지 • 검사기관 : 은행입금 - 위생교육 : 연 6회 실시 - 확인검사 및 감시지도 : 연 6회